



사회적농업 운영매뉴얼

발달장애인
지역사회자립형

(주)희망그린마을



감자꽃을 따다 - 손택수

주말농장 밭고랑에 서 있던 형이 감자꽃을 따다
철문형, 꽃 이쁘는데 왜 따우
내 묻는 말에
이놈아 사람이나 감자나 너무 오래 꽃을 피우면
알이 튼실하지 않는 법이여
꽃에 신경 쓰느라 감자알이 굵어지지 않는단 말이다
평소에 사형으로 모시는 형의 말씀에 따라 나도 감자꽃을 따다

꽃 핀 마음 뚜우 똑 끊어낸다
꽃시절 한창일 나이에 일찍 어미가 된 내 어머니도
눈 질끈 감고 아까운 꽃 다 꺾어냈으리라
조카애가 생기고 나선 누이도
화장품값 옷값을 말없이 줄여갔으리라
토실토실 잘 익은 딸애를 등에 업고
형이 감자꽃을 따다
딸이 생기고 나선 그 좋은 담배도 끊고
술도 잘 마시질 않는다는 독종

꽃핀 마음 뚜욱 똑 분지르며
한 소쿠리 알감자 품에 안을 날을 기다린다

1. 사회적 농업의 이해

1. 지역사회 문제 인식

발달장애인의 문제는 협의적으로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구성원의 문제로 치부될 수 있지만, 발달장애의 특성 즉, 영구적으로 지속될 확률이 높으며 많은 의료적, 교육적, 복지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측면. 이로 인한 많은 비용의 발생 등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본다면 광의적으로는 지역사회 혹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발달장애인법(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 및 지역사회의 통합은 시대의 흐름이라 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은 할 수 없다는 인식, 사회와 분리시켜 치료 및 교육 기타 복지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발달장애인 및 가족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해 주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로드맵”-2021년 08.02일 발표(첨부자료)에서도 모든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의료, 교육, 노동, 복지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되어 있다.

현재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장애인의 70%이상이 발달장애인으로 정부의 장애인의 탈시설이라 함은 발달장애인의 탈시설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즉, 기존의 발달장애인들을 획일적 관리의 측면으로 접근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발달장애인이 다른 장애인들과 혹은 비장애인들과 함께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접근이 필요할 때이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 지원 정책을 새롭게 구현하는데 있어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지원 정책이 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수립하는 일이다. 해외에서는 일찍부터 정상화 이념, 즉 발달장애인이 일상적인 환경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보통의 삶”을 영위할 동등한 권리가 있다는 기본적인 인식하에 삶의 주요 영역에 걸쳐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들이 강구되어 왔다. 또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보호나 시혜적 조치가 아닌 ‘사람 중심 계획’으로 지칭되는 것처럼 발달장애인 개인의 선택과 욕구를 바탕으로 삶의 중요한 과업을 수행하거나 의미있는 활동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시중심의 생활방식과 경쟁위주의 환경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들에게 보통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깨닫게 해 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농업의 기반위에서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들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의료, 교육, 노동, 복지서비스의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발전의 한 틀을 담당하여 따뜻하고 함께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내에서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방안 및 그 가족들의 자립방안을 사회적 농업 속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의 일상적인 삶의 주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직업, 평생교육, 주거 등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발달장애인 문제			
개인의 문제	가족의 문제	지역사회 문제	국가의 문제
1. 의료 2. 교육 3. 복지 4. 노동	1. 주거 2. 부양 3. 경제적 4. 문화적 5. 사회적	1. 편견과 차별의 문제 2. 사회통합 3. 님비현상의 문제	1. 돌봄정책의 문제 2. 비용의 문제 (국가적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

2. 지역사회 문제해결방안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료, 교육, 복지, 노동 서비스의 제공 이를 통한 올바른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계의 연결이 필요할 것이다. 기존 도시중심의 지역사회 내에서는 비장애인들의 틀 속에서 혹은 지체 및 시·청각장애인에게 묻힌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부족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적농업 혹은, 농촌의 틀 속에서 발달장애인에게 좀 더 체계화되고, 발달장애인 중심적인 삶의 방식을 실현해 줄 수 있다고 본다.

농촌의 환경은 발달장애인이 생활하기에 의료시설의 부족,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부족 등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요구하는 복지의 접근이 아닌, 당사자 중심의 만들어가는 복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많은 기회의 제공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치유농업, 사회적 경제등..)을 하여 왔으며, 일정부분 성과를 내었다고도 볼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로드맵”-2021년 08.02일 발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적농업을 통한 발달장애인의 정착은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농업에 대한 관심이 정책적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농업과 보건복지의 결합이라는 혁신적 실험이 시작되고 있는 과정이다. 사회적농업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삶이 회복되고 지역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면 사회통합이라는 과제는 자연스럽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농업은 그 자체로 자연이 주는 환경적 치료의 힘과 농작업이 주는 몰입감, 농작물의 성장과 수확의 기쁨, 마을 주민들과의

자연스러운 관계 형성을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발달장애인 문제 해결 (사회적 농업 방식)			
개인의 문제	가족의 문제	지역사회의 문제	국가적 문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의료, 교육, 복지, 노동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가족단위의 부양 책임을 마을 단위의 공동체가 함께 해결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사회서비스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귀농귀촌 인구유입에 도움이 됨	탈시설화의 정부 정책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복지부문에서의 지역 격차를 줄일 수 있음.

(주)희망그린마을은 장애인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여 자연친화적 삶의 가치를 극대화 시키고 지역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함과 아울러 장애인들의 올바른 자립생활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도농연계 지역공동체이다. 자연친화적 평생교육 시설과 일터, 복지시스템을 구성하고 장애인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두루 공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원하고 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한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에서 착안하고, 네덜란드의 케어 팜 농장에서 사업 아이템을 가져왔다.

2007년 어렸을 때부터 함께 성장하여, 이제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되어버린 발달장애인 부모님들과 당시 사회적기업인 세종장애아동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던 방대진 대표가 발달장애인에게 맞는 새로운 삶의 모델을 만들고자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이다.

2008년부터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과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여 왔다. 자립형 모델을 만들고자 지원을 받기보다는 스스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장애인복지 환경(패러다임)의 변화

탈시설화 (De-institutionalization)

정상화 (Normalization)

사회통합 (Social Integration)

자립생활 (Independent Living)

인권 패러다임

패러다임 변화의 단상 : 자립생활

세상은, 장애인복지환경은 끊임없이 변화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글 『당신과 나』

난 원생으로써 복지시설에서 생활훈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고
당신은 당신의 가정이나 당신이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는 사람

난 친하지도 않은 여섯 또는 일곱 명의 사람들과
한 방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이고
당신은 혼자 살고 싶다고 독방을 쓰기도 하고
때론 함께 살고 싶은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는 사람

내가 내 주장을 하면 공격적인 사람이고
당신이 하면 자기 주장이 뚜렷한 사람

내가 하면 치료 레크리에이션이 되고
당신이 하면 여가 활동 이라네

내가 하면 문제 행동이고
당신이 하면 버릇이 조금 없는 사람이거나 자유분방한 사람이겠지?

II. 사회적농업 활동 실행

1. 활동추진 체계

가. 사회적농장 운영 목표

‘사회적 농업은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려야 할 편익이나 권리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을 끌어안는 사회 통합의 실천이다.

특히, 농업 부문이 앞장서는 실천이다.

농업인은 무엇보다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 공급하는 주체로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청받는다. 그런데 농산물 생산자로서의 역할 외에도, 농업 활동을 매체 삼아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혁신하려는 다양한 실천이 출현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회적 농업이다.’

발달장애인에게 있어 사회적농업이란 발달장애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당한 사회서비스 요구권을 실현함과 동시에 가족에게는 발달장애 자녀의 돌봄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욕구를 해소하는 사회서비스의 새로운 모델이라 할 것이다.

1) 발달장애인 가족 귀농, 귀촌 자립모델 구축-돌봄

: 정부의 탈시설화 방침에 따라 발달장애인은 가족의 구성원으로써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일반화, 보편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부모의 고령, 질병, 형제 자매의 분리 등의 가족적 문제와 발달장애의 특성에 기인한 원인으로 인하여 도시 및 인구밀집지역에서의 돌봄이 어려운 상황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농촌 생활은 의료 시설의 부족, 복지서비스의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고, 가족의 특성을 반영한 여러 가지 형태의 삶의 방식을 만들어 갈 수 있다.

또한 예전의 발달장애인을 관리한다 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였다면, 앞으로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발전하리라 생각된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농업을 바탕으로 한 농촌 생활은 요구하는 복지의 틀에서 벗어나 개개인 장애특성과 가족에게 맞는 만들어가는 복지의 기본 틀 속에서 많은 장점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 귀농가정 3가정의 발달장애인들과 장애청소년들이 농장에 있는 시간을 늘려가며 농작업과 마을 생활을 익히는 농업활동 프로그램 운영 (3월~10월)

- 실제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하루의 활동을 장애인 및 가족들과 비장애인 농업인들과 함께 경험

2) 성인 및 발달장애인 청소년 대상 주말농장 운영 - 교육, 노동

: 주5일 근무제의 정착, 워라벨(work&life&balance)의 일반화, 빈부 격차의 심각성

등으로 인하여 발달장애인 돌봄은 주말시간대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획일적 직업 훈련이나 교육 등으로 인하여 발달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또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주말농장을 매주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에 대한 교육도 있지만, 좀 더 자유롭고 자연친화적인 농촌에서의 삶에 익숙해 지도록 지도하고 있다.

3) 장애인 인식 개선 함께하는 사회적 농장 프로그램 운영 - 통합, 연대

: 도시민들이 농촌과 농업을 이해하기 어렵듯이,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발달장애인의 이해를 돕고 농촌과 농업을 매개로 좀 더 자유로운 곳에서 자연스러운 서로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분	기간		교육내용	인원	목표
1. 일일 프로그램 (발달장애청소년)	당일 체험	월1회	자연과 농업 활동 체험, 수확, 요리	10~15	농업과 생활을 경험
2. 일일 프로그램 (다함께돌봄센터)	당일 체험	월1회	일상적인 농업 활동 참가	10~15명	사회생활을 경험
3. 주말 프로그램 (청암학교 전공 과)	월4회	1년 (36주)	일상적인 농업 활동 참가, 출퇴근	5~7명	인턴 과정 준비 기간
4. 인턴 프로그램 ()	1년 단위	12개 월	농장에 출퇴근, 농업활동·지역 활동 참여	3명	평가를 거쳐서 고용을 목표
교육, 돌봄 고용의 통합적 관리					

나. 사회적농장 보유 자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농촌 정착을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에 맞는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에 맞는 인적, 물적, 사회적자원을 만들어야 한다.

1) 인적자원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인적자원이라 함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접 발달장애인과 함께 그들을 요구를 해결해 주는 직접적인 지원인력과, 지역사회에서 이들의 기본적인 요구 즉, 의식주를 비롯한 정신적 신체적 요구를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간접적, 혹은 복지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희망그린마을 사회적농장의 인적자원

직접지원 인력

성명	소속	프로필	주요업무
방00	사회적기업 (주)희망그린마을	대표	희망그린마을 총괄
박00		자립지원실장	발달장애인지원/사회적농장지원
이00		생활지원팀장	발달장애인 총괄
이00		기획홍보	사회적농장지원
김00		사회적농장	사회적농장총괄
양00		주방관리	식생활총괄
손00		시설관리	시설관리총괄
우00		활산리산촌생태체험마을	자연치유, 명상전문가
한00	주말학교 강사		주말학교 지원
유00	세종장애아동통합지원센터	네트워크 협력 지원인력	행정사무
임00	세종장애아동통합지원센터	네트워크 협력 지원인력	발달장애인 지원
장00	제천시 장애인 부모연대	사회적농업 강사	사회적농장지원
남00	제천시 장애인 부모연대	사회적농업 강사	사회적농장 지원
이00	제천시 생활음악협회	사회적농장 운영관리	음악치료/농장지원
이00		음악치료수업	음악치료/농장지원

간접적 지원인력

성명	소속	프로필	연계주요업무
전00	제천시 장애인 부모연대	회장	농장 프로그램 참여
김00	제천시 발달, 지적 복지협회	센터장	활동보조 농장 프로그램 참여
이00	제천시 직업적응훈련시설	원장	훈련시설 농장 프로그램 참여
국00	제천 청암학교(특수학교)	교장	방과후 농장 프로그램 참여
김00	세명대	교수	네트워크 연계 프로그램 참여
권00	세명대	교수	네트워크 연계 프로그램 참여
안00	대원대	교수	네트워크 연계 프로그램 참여
임00	대원대	강사	네트워크 연계 프로그램 참여
한00	동부교회	사무장	네트워크 연계 프로그램 참여
조00	(주)국민트렌스	상무	지원연수 농장 연계 참여
이00	책임는 염소농장	대표	사회적농장 연계 프로그램 참여
한00	(주)청년마을	대표	컨설팅/네트워크 차며
박00	제천시 다함께 돌봄센터	센터장	일반아동 대상 프로그램 참여
고00	세종 장애아동 통합지원센터	대표	발달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참여
한00	하늘아래 주간보호센터	대표	발달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참여
홍00	함께하는 우리 주간활동센터	대표	발달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참여

2) 물적자원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농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을수 있는 토지뿐 아니라, 발달장애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한 숙소, 휴게 공간,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교육시설 등이 필요하다.

시 설 명	특징 (시설규모(m ²), 소유자 등)	활용 계획	비고
농 장	비닐하우스 4개동 1,200m ² (임대) 오미자 밭 3,100m ² (시유지) 고추농장960m ² (임대) 교육용 텃밭 840m ² (소유)	옆의 시설들을 이용 다양한 농업활동을 통해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농산물 선정, 개개의 특성에 맞는 농업 환경 제공	기후 영향을 덜 받는 비닐하우스 및 다양한 조건별 농작물 수확
교육장	1개동(법인소유)	지역네트워크 공동사용	
귀농인의 집	2개동	귀농예정인가족	
숙박시설	3개동(원룸 형태)	참가자 및 참여희망가족	지원주택으로 개보수 필요
식당시설	1개소(공동사용)	주말학교 및 농번기	

3) 네트워크 자원(간접 자원인력과 동일)

발달장애인의 자립 및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촘촘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많은 장애인 단체들과 기관이 진척되어 있는 곳이 좋다.

- 가)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 융합적 네트워크
- 나) 발달장애인의 의료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의료기관 네트워크
- 다) 발달장애인의 교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교육기관 네트워크
- 라)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노동관련 네트워크
- 마)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정착을 도울수 있는 당사자 단체 네트워크
- 바) 발달장애인 가족 및 당사자간의 교류를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

다. 사회적 농장 운영 계획(단기, 중장기)

희망그린 마을 사회적 농장은 농산물 생산 외에 지역사회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와 연합하여 사회적 농업 활동 및 농촌에서의 다양한 사회복지 모델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탈시설 장애인들과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농촌정착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정주여건이 갖추어진 농장을 만들어 가려하고 있다. 따라서 그에 맞는 사회적농장 운영 계획이 필요하다.

1) 단기(1-2년차)

발달장애인 및 대상자 가족들의 욕구파악을 통한 운영 프로그램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사회적농장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들은 신체적 활동이 둔감하거나, 운동능력 및 인지 기능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따른 교육 내용등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농작업 또한 이들의 활동반경을 고려하여 넉넉하고 편리하게 조성될 필요가 있다. 농장의 작업 환경 외에도 화장실과 교육실 휴게공간을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시설을 보수하거나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범적으로 특정되고 동참의지가 강한 대상자들을 선별하여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행하기보다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잘 알고 있고 사회적농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을 추천한다. 참여 대상자의 내용은 사회적 농장의 경험이 축적되면 확장할 여지가 많다. 또한 지역사회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발달장애인 교육, 복지시설과 교류 할 필요성이 있다.

2) 중장기(3년차 이후)

어느정도 기반이 조성되면, 지역사회 내에서 우리 사회적농장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사업 초기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 위주의 운영 방식 이었다면, 3년차 부터는 지역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으며, 지역내 부족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특화된 영역이긴 하지만 지역내 발달장애인 및 가족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회적 농업 활동은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의 측면에서도 개별농장 단위에서 실행되는 것보다 마을단위 혹은 읍 면단위에서 펼쳐지는 것을 지향한다.

이는 마을 주민들의 이해와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마을의 농민, 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적농업 활동에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연대하여 같은 공동체임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적 농업 사업 운영 계획(1-5년차)

구 분	내 용	비고
사업 목표	✓사회적 농업을 통한 발달장애인 커뮤니티 케어 모델 구축 =복지,교육,노동,자연치유 등이 함께 공존하는 삶의 모델 제시 ✓발달장애인 농촌 자립 및 그 가족의 귀농귀촌 지원 =탈시설화에 따른 가족중심의 새로운 자립생활 모델구축	발달장애인 사회적농업 표준사업장 구축
사업 내용	1 년차 · 발달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및 직무 교육 실시(주1회,1박2일) =주말학교 및 계절학교 · 발달장애인 가족 대상 귀농·귀촌 프로그램 운영(3가구) · 탈시설 발달장애인을 위한 독립생활 주택 공간 마련 · 제천시 다함께 돌봄 센터 아동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진행 (월1회, 10명 대상)	‘21년
	2 년차 · 발달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및 직무 교육 실시(주1회,1박 2일) · 봉양읍 소재 오미자 농장 및 고추 농장들과 네트워크 구축 · 발달장애인 가족 대상 귀농·귀촌 프로그램 운영(3가구) · 제천시 다함께 돌봄 센터 아동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진행 (월2회, 20명 대상)	‘22년
사업 내용	3 년차 기존사업 계속적 진행 및 추가사업 시행 · 발달장애인 대상 농업 직무 교육 실시 및 교재 발간 · 네트워크 구축된 농장들에 대한 사회적농업 인큐베이팅 · 사회적농업운영인력 양성(2명 신규고용) =복지,교육,농업을 결합 할 수 있는 사회적 농업가 양성 · 발달장애인대상 농업매뉴얼 책자 발간	‘23년
	4 년차 기존사업 계속적 진행 및 추가사업 시행 · 발달장애인 대상 농업 직무 교육 및 자립 지원 · 농업 직무 교육 내용 확대(지역 네트워크 구축) · 발달장애인 가족중심의 귀농귀촌 지원 교육(월1회,10가족 이내) · 도농교류를 통한 도농간 광역네트워크 구축	‘24년
	5 년차 기존사업 계속적 진행 및 추가사업 시행 · 발달장애인 대상 농업 직무 교육 및 자립 지원 · 발달장애인 가족중심의 귀농·귀촌 지원 교육 =발달장애인 5명 고용 및 가족고용(발달장애인 농업 표준사업장) · 발달장애인 사회적 농업의 꿈 책자 발간	‘25년

2. 사회적농장 주요 이용자 이해

가. 이용자 행동 및 심리특성

발달장애인(developmental disability)의 정의: 발달장애란 어느 특정 질환 또는 장애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인 관계, 의사소통, 인지 발달의 지연과 이상을 특징으로 하고, 적정연령에 맞게 발달하지 못한 상태를 모두 지칭한다.

언어, 인지, 운동, 사회성, 신변처리 등이 또래의 성장 속도에 비해 크게 느려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조 능력이 떨어진다.

발달장애를 진단하는 데에는 사회성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발달 수준의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고, 또래와 비교하기 때문에 상대적 일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크게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자료에서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에 대한 구분으로 나누어 이야기하려 한다.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적용이 가능한 장애 역시 신체적 발달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장애에 적용 가능하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패러다임 변화의 단상 : 자립생활

장애인 복지의 가치와 철학은
이미 현장 전문가인 우리보다 더 멀리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글 『당신과 나』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 시간을 보내면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이고
당신이 이성친구를 만나 시간을 보내면 데이트라고 하네

내가 버스정류소에서 우연히 만난 예쁜 여자에게 말을 걸면
선생님에게 주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당신은 당신의 아내를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처음 만난 인연으로 결혼을 했다네

담당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은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정도를 목표로 세워 두지만
당신은 인생의 목표를 세워 놓고도 단 한번도 실천한 적이 없다네

나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 놓은 수많은 기록들이 있지만
그것은 나 말고 다른 선생님들만 보는 것이고 나는 내용도 모른다네

그러나 당신은 친구가 당신의 일기장을 몰래 훑쳐보았다는 이유로
그 친구와 한 달 동안이나 말을 하지 않았더군...

	지적장애 (intellectual disabilities)	자폐성장애 (autism spectrum disorders:ASD)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지능지수 평균 이하의 지적능력 -적응 행동(자립능력과 사회적 책임감을 의미)문제 -발달연령기간(0세에서 18세에)에 나타나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 -사회적 특징(대인관계의 어려움) -의사소통 -특이한 행동
일반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 정서적으로 미성숙하여 연령과 상황에 부적절한 행동을 보임 -신체 및 성장 면에서는 비교적 일반인과 비슷함 -운동 능력 면에서는 일반인과 비교하여 지체되며 지능이 떨어질수록 더욱 지체됨 -지능이 지체되어 있으며 추상적 개념, 수개념, 한글해독, 응용력, 단기 기억력, 시간 및 공간 개념 등이 지체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또래들에게 관심이 없고 어울리지 않고 늘 혼자 있다.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손짓이나 몸짓을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다. -언어가 어느 정도 발달하더라도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의미 없는 명칭 등을 혼잣말로 하는 경우가 많다. 주변 환경의 조그만 변화에도 예민하다. -손을 눈앞에서 계속 흔들거나 물건을 계속 돌리는 것과 같은 상동 행동들을 계속 하기도 한다.
잘못된 오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전병이다. -일종의 정신병이다. -지적장애는 고칠 수 있다. -지적장애는 머리가 나빠서 가르쳐도 소용이 없다. -지적장애인끼리 수용시설에 사는 것이 좋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폐는 단일 장애 범주이다. -자폐는 지적장애가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받고 전문직에 종사하기 어렵다. -자폐성 장애인들은 몇몇 인지적인 부분이 손상되어 있으나, 다른 부분에서는 천재적이거나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다. -나쁜 양육 태도, 특히 차갑고 무반응의 냉장고형 엄마가 자폐의 원인이 된다.

나.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 방안

발달장애인은 장애 그자체보다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과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상실하는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들의 장애로 인한 능력을 향상시키고 불리한 여건을 없애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이들이 속한 지역 내에서 의미 있는 대인관계를 맺고 독립된 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희망그린마을 농장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구성(안)

과정	구분	교육대상	숙박	기간	교육내용	참여방법	인원 (명)	목표
바른 인생	일일	비장애인 아동 체험	당일	1회 체험	자연과 농업활동 요리 및 명상 관련활동	다함께 돌봄센터 신청	10명 이내	농업과 농촌의 이해
	일일	발달장애 아동 및 청소년	당일	월1 회	자연과 농업활동 요리 및 명상 관련활동	학교 및 주간활동 센터 또는 소속 그룹별 시행	10명 이내	농작업을 통한 경험 및 교육
	주말	발달장애 청소년 및 성인	1박2 일/2 박3 일	매주 (36 주)	일상적인 농업활동 및 명상,자연친 화프로그램	기초조사 서를 토대로 선발	5-10명	농작업 능력배양 및 직업교육
	주말	비장애인 가족	1박2 일/2 박3 일	매주 (36 주)	일상적인 농업활동 및 명상,자연친 화프로그램	체험캠프 신청자	5가족	농작업을 통한 경험 및 자연친화 교육
	인턴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족	1년 과정	매주 56 주간	농장에 출퇴근,일상 적인 농업활동 차며,지역활 동 참여	가족의 신청에 따른 의지 및 심사	3가족- 5가족	가족의 귀농귀촌 및 고용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장의 핵심적인 가치는 ‘이들이 농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의미있는 하루하루를 보내며, 삶의 의미를 획득하고 자립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생활시설이나 가족내에서의 돌봄으로 인하여 의존적인 정체성과 자기 방어적 삶의 방식이 내재화된 발달장애인은 사회적 농장이 제공하는 돌봄활동의 이용자(수혜자)이면서 노동을 통해 농장의 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고

유의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서비스의 핵심은 발달장애인의 노동능력이 전문 농업인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할지라도 사회적 농장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농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해낼 수 있도록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며, 일의 단계를 세분화하여 안내하는 것이다.

또한, 발달장애인이 일 중심의 일과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와 접할 수 있도록 접점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들이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마을의 농업인이나 작목반등을 통해 농작업의 다양한 과정을 함께하도록 구성할 수 있고, 다른 농장에서 새로운 농작물과 농작업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일정을 조율할 수도 있다.

사회적 농장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여러 가지 형태로 가능하며, 아래 희망그린 마을농장에서 진행하는 사례를 참고하여 각 농장에서 가능한 범위를 설정하도록 한다.

3. 활동 내용

가. 활동 장소

사회적 농업은 농업 활동을 기반으로 사회적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장소는 '농장'이 되어야 한다. 주요 작목에 따라 작업 환경이 비닐 하우스나 대지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농장'을 배경으로 관련 활동이 이뤄진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작업공간 외에 휴게공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낮의 뜨거운 열기와 예고 없이 쏟아지는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노동의 피로를 떨치고자 따뜻한 차 한 잔을 놓고 둘러앉아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농업 활동과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자연물 만들기, 요리하기, 목공 등-을 접목하고자 한다면, 실습장의 공간도 마련되어야 한다. 농장 내에서 소화하기 어렵다면 인근의 유희공간이나 마을의 공유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화장실 등의 공간 확보가 필수요소이다. 가족귀농인의 경우 가족 및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주거지원이 필수적 요소이다.

나. 활동 시기, 횟수

흔히들 '농사일은 끝이 없다'고 표현한다. 계절에 따라 농작물의 성장 속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농장을 돌보고 가꾸는 일은 1년 365일 계속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이점도 있다. 농업 활동을 기반으로 한 돌봄 활동도 1년 365일 기간에 제약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매주 혹은 격주 과정으로 4~8회기 정도를 진행하는 것이 농장 입장에서 무리하지 않는 선이 될 수 있다. 농업 활동은 날씨와 계절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고, 때에 따라 작업 내용이 변화하는 등의 강점이 있다. 가능하다면 강점을 적극 이용하여 6개월 단위로

활동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활동의 시기와 횟수는 농장의 여건과 역량, 협력기관의 상황에 맞게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참여자의 고용을 고려하고 있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작물의 재배 시기에 따라 구체적인 기간은 상이하겠지만, 적어도 1작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4~6개월 동안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좋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 변화에 따른 농업 활동을 경험하기 위하여 1년 단위를 생각할 수도 있다.

다. 활동 시기, 횟수

1) 사전 기획

농장 단위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발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바람직한 구조는 사회적 농장과 특수학교 및 발달장애인 대상 사회복지시설의 협력으로 대상자를 만나는 것이다. 농장은 농업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기획하고, 특수학교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참여자를 발굴하고, 활동에 연계하며, 비상시 전문적인 개입을 도맡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좋다.

2) 첫 만남

① 환대하기

누구나 낯선 장소에서 낯선 사람을 만날 때 긴장감을 느낀다. 첫 만남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이 농장이 안전한 공간임을 확인시키고, 편안한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여자가 이전에 사회적 농업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더라도 그들에게 장소와 일정을 친절하게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한 활동 없이 앉아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거나, 다과를 즐기면서 편안하게 시작하도록 한다.

같은 맥락에서 참여자를 ‘대상화’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대상화하는 것은 참여자를 결함이 있는 존재로 보고, 동정이나 시혜의 대상으로 여기는 편견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는 참여자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작업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같은 인격체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② 소개하기

사회적 농업 활동 진행자와 참여자는 서로 인사를 나누며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진행자가 먼저 자신을 소개하고, 참여자들이 스스로 본인을 소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참여자의 장애정도에 따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참여자가 자신의 최소한의 정보(이름, 지역, 나이, 참여 동기 등)에 대해 소개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줌으로써 표현을 격려한다.

자기주도적 소개가 어려울 경우에는 가족이나, 동행 사회복지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③ 규약 설정하기

프로그램 세부 일정과 (숙박의 경우) 생활 수칙을 안내함으로써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감을 줄이고, 구조화된 일과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참여자 명찰 뒷면에 일정표를 제공하는 것도 좋다. (숙박의 경우) 프로그램 일정표와 생활 수칙을 숙소에 부착함으로써 참여자들이 이에 익숙해지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장에서의 행동규칙, 활동절차 및 방법과 관련된 사항의 설명은 명확해야 한다. 예를 들어 휴식시간의 운영, 휴게 공간 등이 해당한다.

④ 공간 안내하기

첫 만남 단계에서는 현장(농장)보다는 교육실과 같은 외부공간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참여자가 주변환경을 인식하고 본인의 행동반경을 고려하여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공간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위치와 사회적 농업 활동을 진행할 농장의 위치, 활동 시 이용하게 될 식당과 화장실 등의 공간 정보를 관련 사진을 통해 소개하거나 직접 이동하면서 안내하도록 한다.

⑤ 구체적인 활동 내용 소개하기

사회적 농장은 참여자들에게 구체적인 농작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자들의 이해를 넓히고 호기심을 자극하도록 한다. 세세한 작업요령은 작업 시작 전에 진행하더라도, 전반적인 진행 흐름을 안내하는 것이 좋다.

3) 주요 활동

① 농작업

농작업은 참여자의 자연스러운 신체적 움직임을 촉진하고, 시각, 후각, 촉각, 미각, 청각의 오감을 자극하며, 자연환경 속에서 계절과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새로운 기술과 어휘를 습득하며, 자신이 속한 집단구성원뿐만 아니라 집단 외 구성원들(마을 주민)과도 상호작용할 수 있다. 특히, 공동 작업이 많은 특성상, 자연스럽게 타인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작업을 수행하면서 의사표현의 기회와 타인의 의사수용 기회를 얻는 등 대인관계 및 상호작용에도 효과적이다.

농장의 규모와 농작업의 성격 등에 따라 참여자의 인원을 조정하며, 참여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모둠별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장소(농장)에서 농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농작업은 참여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 결정의 기회를 제공한다. 신체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참가에게는 밀착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작업은 별도로 새로운 활동을 기획하기보다 사회적 농장이 재배하는 작목의 상황과 절기에 맞는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구성한다. 작은 씨앗을 파종하는 소근육 작업부터

대근육을 활용하여 밭을 만드는 작업까지 다양한 수준으로 구성할 수 있다.

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사전 안전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간단한 체조로 몸과 마음(정신)의 긴장을 완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활동이나 계절, 주변 환경에 따라 불시에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장비의 활용이나, 농작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② 농업 관련 활동

농작업은 원예, 미술, 요리, 목공 등의 관련 활동으로 확장될 수 있다. 직접 수확한 작물로 참여자들이 협도하여 음식을 만들고 함께 나눠 먹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요리 활동은 농작물 수확의 기쁨과 동시에 완성된 요리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농장에서 꽃이나 허브를 재배하는 경우에는 원예 활동을 접목할 수 있다. 모종을 화분에 옮겨 심고 활동의 결과물로 제공하면, 사회적 농업 활동이 종료한 후에도 가정에서 식물을 기르는 재미와 책임감을 느낄 수 있다.

③ 마을 자원 활용 활동

자연경관은 그 자체만으로 치유적 기능을 수행한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사하는 것은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하고 몸의 피로를 덜어준다. 농장 인근의 자연경관을 활용하는 활동을 고려하는 것도 좋다.

걷기 운동은 특별한 장비 없이 누구나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스트레스, 불안감, 우울증을 감소시켜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사 시간 이후에 다 함께 마을 주변을 걸으며 산책하는 것은 자연경관을 활용하는 건강 유지 활동일 뿐만 아니라 참여자 간 유대감 증진에도 도움을 준다. 때에 따라서는 마을마다 '마을 경관 조성'의 일환으로 폐농약을 수거하거나, 저수지 산책로의 쓰레기를 줍는 환경미화 등의 활동이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마을 활동과도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다.

④ 기타 집단프로그램의 결합

일반적인 사회적 농업 활동은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참여자의 모집방법에 따라 집단 내 구성원이 친숙하고 친밀한 관계일 수도 있지만, 다양한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연결된 경우에는 서로가 낯선 관계일 수 있다. 사회적 농업 활동에 관심이 있고 경험해 보고 싶다는 공통의 목적의식은 있으나, 상호 유대감은 낮은 수준일 수 있다.

숙박형으로 사회적 농업활동을 진행한다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와 합의하여 저녁 시간을 활용한 집단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레크리에이션, 운동요법, 호흡이완 등의 집단 프로그램은 함께하는 참여자들 간 친밀감을 도모하는 데 있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각 사회적 농장에 적합한 형태의 프로그램 일정표가 기획될 수 있다. 희망그린마을 농장에서 진행하는 다음의 사례를 참고하여 각

농장에서 가능한 범위를 설정하도록 한다.

협동조합 행복농장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일정표(안): 1박 2일 바른인생

일자	시간	주요내용	장소	담당자
1일차	09:00-09:30	인원확인,숙소안내,복장정리	실내교육장	농장담당자
	09:30-10:00	인사하기,산책,농장이동	박달재일원	농장담당자
	10:00-12:00	농업 교육:교육장및텃밭	체험교육장	농장담당자
	12:00-14:00	점심식사 및 휴식	희망그린식당	동행관리자
	14:00-16:00	농작업 활동:오미자 농장 고추농장	오미자,고추농장	농장담당자
	16:00-17:00	숙소이동 및 샤워하기	숙소샤워실	동행관리자
	17:00-19:00	저녁식사 및 휴식	희망그린식당	동행관리자
	18:00-19:00	개인위생 및 몸상태 확인	독립생활주택	동행관리자
	19:00-20:00	간식 및 자체 프로그램	독립생활주택	동행관리자
	20:00-이후	자유시간 및 취침	독립생활주택	동행관리자
2일차	08:00-09:00	기상	독립생활주택	동행관리자
	09:00-10:00	아침식사 및 산책	박달재일원	농장담당자
	10:00-12:00	농업 교육:교육장및텃밭	체험교육장	농장담당자
	12:00-13:00	점심식사 및 휴식	희망그린식당	동행관리자
	13:00-14:00	숙소 정리 및 짐 챙기기	독립생활주택	동행관리자
	14:00-16:00	소감나누기,기념사진 촬영	실내교육장	농장담당자
	16:00-	집으로 출발		동행관리자

4) 평가

① 참여자 평가

발달장애인은 개인의 장애특성과 도전적 행동 등으로 낮은 수준의 사회성을 보이고, 감정 표현의 어려움을 느낀다. 이러한 특성을 염두에 두고 회기마다 활동에 대한 생각과 기분 상태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참여자 입장에서는 스스로 일과를 정리할 수 있게 돕고 의사소통 능력을 촉진한다. 농장 입장에서는 참여자의 만족도와 요구사항을 토대로 향후 활동에 반영할 사항들을 점검하는 기회가 된다.

② 종합 평가

사회적 농업 활동이 모두 종료된 시점에는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혹은 장애인가족과 활동에 관해 전반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사전기획 단계에서 협의한 사항들의 진행 여부, 사회적 농업 활동을 수행하면서 직면한 어려움과 새롭게 발견한 가능성, 참여자의 만족도를 반영하여 향후 사회적 농업 활동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라. 참여 인원(운영자, 이용자)

농장의 규모와 내부인력은 한정적이므로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을 제한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농업은 농업 활동의 중요성 못지않게 농장과 참여자의 사회적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농장 인력 1인데 참여자 2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만약, 참여 인원이 10인 이상이 된다면 한 농장이 전원을 전담하기 보다 인근의 협력 농가를 발굴하여 활동 내용과 시간을 분담한다. 참여자는 다른 농가에서 새로운 작물과 사람을 만나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협력 농가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으며, 사회적 농장으로의 진입을 고민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4. 비상시 대응 방안 (사회적 농업 활동 시 유의점 등)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완치라는 개념이 없는 상태가 많아 감정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해 도전적 행동등의 증상이 안정되지 않았을 경우, 공격성이나 자해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공격성이나 자해 행동은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한다. 다만 응급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방법을 알아 두는 것도 중요하다.

아래의 도표는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의 재발 전에 나타나는 징후들을 나열한 것이다. 평소와 다른 이상증세를 감지하였다면, 책임자 및 사회복지기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교육제외 및 타임아웃 등의 방법으로 사례관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 위험한 행동, 위협적 행동 등이 서비스 제공자의 권위와 결정에 따르지 않고 맞서는 행동 등을 일컫는 말이긴 하지만, 현재는 발달장애 당사자의 행동들이 서비스 제공자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해결 될 수 있는 행동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발달장애인은 갑작스런 도전적행동에 대한 부담과 더불어 사회적 편견 및 낙인과도 싸워야 하는 이중고가 있다. 사회적 농업 활동 시, 발달장애인들이 겪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가. 타인에 대한 공격성

대부분의 발달장애인은 약물치료나 행동치료 등의 방법으로 타인에 대한 공격성을 최소화 하지만, 소수의 경우 요구에 대한 극단적 반응 혹은 현재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 잔존하는 경우도 있다. 타인에 대한 공격성은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지만, 대응하는 교사 및 주변사람들의 적절한 대응 방법으로 스스로의 행동을 조절하면서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기도 한다.

나. 산만함

산만함은 많은 발달장애인에게서 보이는 현상으로 장애증상 자체 때문에 발생하는 수도 있고 치료를 위해 복용하는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다. 산만함은 작업집중에 방해가 되어 생산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소거 될 수 있다. 특히 적응기간에 산만함으로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데 이는 불안함의 표현일 수 있으므로 상담이나 주변 사람들의 이해와 지지, 약물 조절 등 적절한 도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 사회적 고립 또는 위축

장기적인 시설생활 혹은 가정내 고립생활등으로 인한 자신감 저하로 인하여 발달장애인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위축되는 경우가 많다. 또는 주위사람들이 발달장애인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하여 스스로 위축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경우가 심하며 이러한 소극적이고 위축된 태도는 공동작업시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라. 안절부절 못 함

좌불안석하는 태도는 주로 자폐성 장애 혹은 조현병적 증세와 관련이 있으나 다른 장애들에 사용되는 약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다. 심한 경우 주치의와 상의하여 일상생활 수행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약물을 조절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 또는 타임아웃 등의 방법을 취하여 안정을 취하도록 한 후 다시 참여토록 하는 방법도 있다.

마. 느린 동작, 서투른 동작, 형식적 참여

발달장애인들 중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눈이 흐릿하게 보인다거나 걸음걸이가 느리거나 어설픈 경우가 있다. 이러한 발달장애인의 행동이나 모습을 보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편견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약물 부작용 때문이거나 혹은 장애특성에 기인한 경우가 많으므로 배려가 필요한 부분임을 인지한다.

Ⅲ. 네트워크

1. 지역 내 관계기관 현황 (역할)

사회적 농업은 농산물 생산이라는 고유의 영농활동과 사회통합이라는 부가적인 목적을 포함한 다기능 농업의 일종으로 농업과 사회의 여러 분야 간 경계를 넘나드는 연계와 협력을 통해 사회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사회적 농업은 실천 유형에 따라 돌봄(care), 고용(labour), 교육(education)으로 구분된다. 돌봄 유형은 지역사회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 혹은 보기 및 의료보건센터의 돌봄 대상자가 사회적 농장의 농업 활동에 참여하는 형태이다.

돌봄 유형의 사회적 농업은 지역사회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 혹은 복지 및 의료보건센터의 돌봄 대상자가 사회적 농장의 농업활동에 참여하는 형태로 돌봄 농업의 난제는 부문 간(inter-sectoral) 협력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한국의 사회적 농업 실천 현장에서도 부분별, 직능별 행위자(기관, 단체, 개인 등) 간의 연계와 협력이 사회적 농업 활성화의 중요한 조건이며, 협력 네트워크를 잘 형성할 곳 일수록 사회적 농업 실천이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농업 실천 협력 기관(단체)

관련 단체	도농교류 협력 관련단체	지역사회 협력 관련단체
청암학교 제천시 장애인 부모연대 제천시 발달지적 복지 협회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 훈련시설	세종 장애아동 통합지원센터 하늘아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함께하는 우리 발달장애인 교육센터	대원대학교 호텔경영학과 대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세경대학교 미술치료학과 제천시 다함께 돌봄센터 동부교회

2. 네트워크 구축 방안

가. 중앙행정기관의 권고사항 숙지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의 협력은 하부 조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와 권고사항 등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하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장함으로써 다 부문 협력을 추진한다.

중앙행정기관 차원의 다 부문 협력 추진	
<p>-농촌 지역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서비스 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수요 및 공급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농업과 다른 부처의 돌봄,교육,지역 활성화 정책간 협력을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종합지원 대책을 강구 농촌 지역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한다.</p>	<p>-보건복지부-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 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고용노동부-장애인 일자리 사업 -교육부-지역학교 및 방과후 사업 -농림축산부 -사회적 농업 사업 -농어촌공사-도농교류협력사업 -농어촌 희망재단-농촌교육, 문화 복지사업 -기타</p>

나. 다른 분야(조직.기관)와 소통구조 형성

사회적 농장과 보건, 사회복지, 노동, 일자리, 교육 등의 영역이 정보 교류, 공동학습, 열할 조정 등의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농장이 보건, 복지, 교육, 일자리 등 여러 정책 사업에 참여해 부분적으로라도 비용을 보전하는 것과 함께 다른 분야의 종사자들과 함께 실천하면서 '집합적 지식(collective knowledge)'을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농장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연계 가능한 부분 식별

사회적 농업 부문과 연계될 수 있는 영역들을 식별하고, 각 영역에서 제공되는 사회 서비스를 농장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네트워크 기관 간 역할분담

참여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장애인, 특정 질환이나 요구를 가진 참여자를 처음부터 농장에서 찾아 나서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기타 복지 기관 등의 기관과 협력을 통해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찾아 농장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가. 프로그램 공동기획

농업 기반 활동의 기획 단계부터 사회적 농장과 참여기관 간 논의를 통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장과 참여기관,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기대, 목표, 역할이 다를 수 있어 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상호 간 충분한 논의와 조정을 통해 이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프로그램 기획 시 고려할 사항
-참여 발달장애인의 연령(특히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연령 속지는 매우 중요함)
-신체의 발달 및 지체장애의 중복 여부
-복용 약물의 파약(도전적 행동의 파약)
-참여기관과의 역할분담
-부모님 및 보호자와의 충분한 상담
-응급상황 및 안전조치(비상연락망 및 이용가능 병원에 대한 숙지)

나. 사회보장 서비스 일부를 수탁받아 제공

사회적 농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사회복지 및 농정책 사업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농장이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서비스 일부를 수탁받아 제공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 주간활동 서비스사업’은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참여를 통한 교육, 취미, 여가, 특기, 문화, 치료, 지역사회적응 등 다양한 건강생활 및 문화여가 사업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자체의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생활 수준 향상을 도모하며,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삶의 질 증대”를 목표로 지원 대상에 따른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회적 농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주간활동서비스’ 또는 ‘장애인 재활서비스’ 프로그램 일부를 농장 활동에 바탕을 둔 서비스로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사회적 농장은 이 사업의 핵심 실행 주체인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주간활동 서비스를 시행하는 사회복지시설로부터 ‘농장 활동 프로그램’을 수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다. 거버넌스 참여

사회복지 혹은 사회서비스사업과 사회적 농업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단체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관 및 단체들이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교류하며 협업하는 방식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여러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지원서비스마다 이용 자원을 충족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농업인은 그 지역사회의 주민으로서 농촌의 다양한 비공식적 사회연결망을 통해 지역 정보와 자원을 동원하고 활용하는데 유리한 면이 있다.

현재 희망그린마을에서는 제천시의 장애인 조직인 사단법인 제천시 장애인 부모연대, 제천시 발달, 지적장애인 복지협회와 2020년부터 지역 내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 관련 협약을 맺고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방학기간인 여름과 겨울 계절학교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농업을 프로그램의 향

상과 가족의 발달장애인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큰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의 몇몇 농가와 함께 증상이 중증 발달장애인 청소년 및 성인을 15명을 대상으로 주 2회, 총 16회에 걸쳐 농장기반 주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프로그램은 주간활동서비스센터와 희망그린마을에서 공동으로 기획하고 프로그램에 드는 비용은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 예산으로 사용되었다. 참여자 모집 및 인적사항 파악, 교통편 제공은 제천시와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센터가 진행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로드맵”으로 인하여 더 이상 발달장애인은 시설등의 한정된 장소가 아닌, 지역사회 속에서 지역자원의 연계를 통한 삶의 방식을 배우고 지역사회주민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한다.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은 그들이 가진 여러 특성상 농촌에서의 삶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계기가 되어 주리라 믿는다. 사회적농업 속에서의 발달장애인의 존재의미는 잠시의 프로그램이나, 이벤트성 행사가 아닌 새로운 삶의 방식 즉,자연친화적인 삶의 방식을 통한 의료, 복지, 교육, 노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주리라 믿는다.

희망그린마을 협력 거버넌스			
제천 청암학교	제천시 주간활동센터	제천시직업 적응훈련시설	발달장애인 일자리 센터
학생수 감소 주말학교 산골유학센터 학생유치 및 지역특수학교의 활성화	프로그램의 부족 사회적농장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내실화	이용자원의 부족 사회적농장 교육 수료생 이용자원의 확대	협력기업의 부족 사회적농장의 참여 농업에 대한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창출효과

시사점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없던 농촌 지역의 발달장애인에게 지역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 또는 사회적 농장 자체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사회적 농업은 어느하나의 지원체계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연계 및 자체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발달장애인에게 맞는 주간 및 주말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는데 장점을 가진다. -사회복지 및 사회서비스 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특성을 별도의 시설을 확충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시설 및 자원을 활용 사회복지서비스 재공 창구를 형성하였다.

농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버넌스에 참여한 기관 및 단체의 실무자가 농업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초기에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소통을 해 나가는 과

정에서부터 실무자도 농업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 활동에 기반한 돌봄을 실천하는데 있어 농장의 역할은 참여자들에게 농업 관련 활동을 지도하고 함께 하는 것이다. 만약 안전이나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면 농업인이 돌봄 종사자와 같이 전문적인 케어를 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전문기관에서는 참여자들이 농작업이 가능한 수준의 정신적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또한 돌봄이 우선인지, 농작업 능력의 향상이 우선인지 장애정도 및 유형에 맞게 작업의 목적을 설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안전이나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실무자가 그 상황에 함께 있다면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또한, 실무자가 농업 활동에 참여하면 참가자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무엇을 느끼는지 관찰할 수 있고 농민과 함께 성과를 평가하고 참여자에 적절한 프로그램으로 보완하는 등의 농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농장과 기관 간 신뢰가 쌓이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IV.첨부 자료

1. 정책 - 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 나.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계획
 - 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 서비스

2. 법률 - 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발달장애인법)

3. 서식 - 가. 발달장애인 가족 귀농 귀촌을 위한 초기 면접지
 - 나. 발달장애인 가족 귀농/귀촌 교육 결과 보고서
 - 다. 월별 회의록
 - 라. 주말학교 프로그램 운영안
 - 마. 희망그린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모델매뉴얼

1. 정책

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 ▲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 및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 우선 고려
- ▲ 탈시설 장애인이 독립생활 할 수 있도록 물리적 거주공간과 복지서비스를 결합하여 지원
- ▲ 거주시설 신규재소 금지 및 거주인의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거주시설 변환 지원
- ▲ '25년부터 단계적으로 年740여명* 자립 지원 시, '41년에 지역사회 전환 마무리 기대
 - * 정책 후반기로 갈수록 지원인원 감소, 5년단위 지원인원 변화 : 740명→610명→500명→450명

- 김 총리,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주재, 장애계의 오랜 숙원 품다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장애인의 온전한 자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정부는 8월2일(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정책 국정과제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과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안」을 심의했다.

앞으로 20년간 단계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설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지원 조사(연1회)를 의무화하고, 체험홈운영, 자립지원 시범사업('22~)*등을 통해 사전준비 단계에서 추기정착 지원까지 자립경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자립지원사 배치, 주거환경 개선 및 건강검진비 지원 등

또한, 정부는 UN 장애인권리협약 내용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반영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탈시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장애인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서비스 안전망 확대와 함께 시설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오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 정부는 꼼꼼히 검토해서 탈시설 로드맵을 추진하고 장애인 권리보장법안에 대한 논의내용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극 보고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이란?

- ✔ 장애인이 자신의 주거를 선택할 권리에 따라
- ✔ 집과 같은 환경에서 지역사회와 더불어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 ✔ 시설장애인의 거주지 이전을 지원하고(Release),
지역사회 자립 촉진 위해 시설을 변화시키는(Reform) 일련의 지원정책

추진 원칙

지원대상

당사자의 주거결정권
지역사회 거주권리 우선
개인적 요건 선별 배제

탈시설 지원

지역사회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와
복지서비스 결합

시설변환

전문서비스 기관 외 신규
설치 금지 및 이용기준 강화
이행기 시설 운영기준 개선

2022년~2024년

- 시범사업 추진
- 법령개정 등
제도·인프라 구축

2025년~

- 지역사회 거주전환 지원



2041년

- 거주 전환 마무리
(시설거주 장애인은 24시간
요양·돌봄이 필요한
22백명 수준 예상)

대상별 지원 방향

시설거주 장애인

- 자발적 퇴소희망자(2천명)부터 단계적 거주전환 지원
- 자립지원조사 등을 통해 지원대상 확대

2만 4천명

공동 생활가정

- 공동생활가정 운영개편
⇒ 거주자 중심 주거환경 제공



2천9백여명

입소대기 장애인

- 주거·돌봄·의료 등 서비스 통합연계
⇒ 지역사회 내 생활지원



600명
+ 잠재수요자

거주시설에서 삶의 터전으로, 어울려 살아가는 삶의 지원



추진 원칙

- 대상** 장애인 당사자의 주거결정권+지역사회 거주 권리
- 지원** 지역사회 독립생활 가능한 '주거+복지' 서비스 결합
- 방식** 단계적 추진: 시범사업→ 제도·인프라 정비→ 본격시행

지역사회 거주전환

- 1 개인·시설 단위 탈시설 지원대상 발굴·확대**
 - ✓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조사·신청 제도 운영 → 개인지원대상 발굴
 - ✓ 인권침해 시설·대규모 시설 → 시설단위 지역사회 전환
 - ✓ 장애아동은 가정위탁·공동생활가정 등 가정형 보호 우선
- 2 시설거주 장애인 탈시설·자립경로 구축**
 - ✓ 시설 거주자 자립 의욕·역량 지원
 - ✓ 지역사회 거주전환 초기 집중지원
- 3 안심하고 독립할 수 있도록 사외적 지원 확대**
 - ✓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거공간 확보
 - ✓ 주거유지·가사 등 일상생활 지원
 - ✓ 재가서비스 연계를 통한 서비스 공백 방지
- 4 공공·민간 전달체계 유기적 연계**
 - ✓ (민간) 중앙-광역단위 지원기관 설치 및 기초 전달체계 정비
 - ✓ (공공) 시군구 통합돌봄 전달체계와 연계 강화

이행기 거주시설 변환

- 1 과도기 자립촉진을 위한 거주시설 변환**
 - ✓ 신규시설 설치 금지 및 이용·재이용 강화
 - ✓ 거주시설 단위 지역사회 전환 지원
 - ✓ 단기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기능 정상화
- 2 거주인의 자기결정권·인권 보장 중심 시설 운영**
 - ✓ 시설변환: 당사자 중심·지역개방·개별화된 지원
 - ✓ 거주시설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나.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계획

정부가 사회복지 개혁의 중점과제로 추진중인 커뮤니티 케어, 즉 지역사회돌봄 (이하 통합 돌봄)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반면 통합 돌봄에 대한 이해나 장애인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 제시는 아직 미지수이다. 이에 통합 돌봄의 의미 장애인 분야에서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통합 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곳(자기집이나 그룹홈등)에서 개개인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통합 돌봄은 초고령 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광범위한 돌봄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지 위한 목적으로 대상자를 중심에 두고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간 연계를 통한 통합적 제공을 지향한다.

3. 비전과 4대 과제

비전과 목표

- 비전 :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포용국가
- 목표 : 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

4대 핵심요소

- ①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 : 어르신 맞춤형 케어안심주택, 집수리 사업,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
- ②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 집중형 방문건강서비스, 방문의료, 어르신 만성질환 전담 예방관리, 병원 '지역연계실' 운영
- ③ 재가 돌봄 및 장기요양 :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 구축, 재가 의료급여 신설, 식사 배달 등 다양한 신규 재가서비스, 회복·재활서비스
- ④ 서비스연계를 위한 지역 자율형 전달체계 구축 : 케어안내창구 신설(읍면동), 지역케어회의 등 지역사회 민·관 서비스 연계·협력(시군구)

단계별 계획

- ① 1단계 (2018~2022) : 선도사업 실시와 핵심 인프라 확충
 - 선도사업 실시: 커뮤니티케어 모델 개발
 - 생활 SOC 투자: 케어안심주택, '주민건강센터', 커뮤니티케어 도시재생뉴딜
 - 법제도 정비: '(가칭)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법' 제정, 개별법 및 복지사업지침 정비
- ② 2단계 (2023~2025) :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
 - 장기요양 등 재가서비스 대대적 확충
 - 인력 양성,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 구축 및 품질관리체계
 - 재정 전략 마련
- ③ 3단계 (2026년 이후) :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보편화 단계
 - 케어가 필요한 사람 누구나에게 요구에 맞게 보편적 케어 제공
 - 지역사회 중심으로 자율적 실행

정부는 2018 1월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 <커뮤니티 케어> 추진발표, 11월 '지역사회 돌봄 기본계획(1단계 노인중심)'을 발표하며 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제공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본 계획에서는 통합 돌봄 제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추진 로드맵과 4대 중점과제 (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통합제공)을 제시했고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 정착 지원 모델’ 개발도 포함되었다. 이는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2018-2022) 내에 ‘탈시설 및 주거지원강화 정책’과도 연관되어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비전, 4대 과제 및 단계별 계획(출처: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하지만 2020년 3월 발표 예정이었던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 역시 수차례 연기되었다. 정부는 오는 8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도 기한내 추진 여부는 불확실하다.

지역자율형 통합돌봄모형을 만들기 위해 2019년 6월부터 2년간 두 차례에 걸쳐 회당 8개, 총 16개 시군구 대상으로 지자체가 자율성을 갖고 지역별 특성에 맞게 추진된 대상별 선도사업도 통합돌봄의 목적에서부터 이를 위한 세 가지 방향, ▲지원체계 단위 구축 ▲대상자 선정 ▲욕구사정 및 서비스 제공 각 요소별로 부적합 혹은 부실하다는 비판이 높다.

먼저 지원체계 단위를 살펴보면 선도사업 총 16곳 중 노인 부문은 13곳인 반면, 장애인 부문은 2곳(대구시 남구, 제주시), 정신질환은 1곳(화성시) 뿐이다. 제대로 된 모델 설계가 가능한지 반문할 수 밖에 없다. 두 지역에 설치된 통합돌봄 창구는 평균 45.5개소에 전담인력은 평균 71명이다. 두 지역의 선도사업 장애인 대상자가 2,334명, 전담인력 1인당 33명이 담당하는 꼴. 장애인의 욕구를 사정하고 서비스를 연계하기에는 부족한 인력이다.

장애인 선도사업 대상자별로 봤을 때도 한 지역은 65세 이상 장애인이 절반 이상이고, 80세 이상도 20%나 된다. 노인 선도사업인지 장애인 선도사업인지 가히 구분하기 힘들다. 통합돌봄의 핵심은 탈원·탈시설로부터 지역 중심 서비스로의 전환인데 장애인 선도사업 대상에서 시설장애인이 아닌 재가장애인 비율이 83%로, 4배 이상 높은 것도 시범사업의 적절성 논란을 가중시켰다. 장애유형과 정도를 봐도 지적, 지체, 뇌병변 등 특정 장애유형에 한정되어 있고, 경증장애인 비중이 41%에 이른다. 다양한 연령과 장애유형 및 정도를 포괄해야 함에도 대상자 선정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욕구사정 및 서비스 제공 관련해서도 '필요와 욕구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연계 및 지원'이라는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다. 서비스 연계 현황을 비교한 결과를 6건 이상 서비스를 연계한 비율이 노인은 23.1%인데 비해 장애인은 고작 1.8%에 그쳤다. 반면 서비스를 단 1건만 연계한 비율은 60%, 한두 건 연계한 비율은 80%에 이른다. 대상자유형별 서비스제공분야의 경우, 노인 선도사업과 차별화되며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중요한 요소인 '일자리' 지원이 겨우 2% 밖에 안 된다.

현 시점에서 본 사업 실시예 앞서 남은 3차 선도사업 추진 방향성 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공통 필요모형·서비스 도출을 위한 융합형*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노인 중심 개별적 선도사업에서 융합형 방식에서의 전환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다만 현재 계획 중인 일부(3~4곳) 지자체에 한정하는 것이 아닌 전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융합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연령, 장애유형 및 정도, 시설거주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



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 서비스

발달장애인들의 의미 있는 낮 시간을 지원하는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의 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1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침’과 ‘202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침’을 개정, 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침 개정을 통해 기존에 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자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체험홈,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취업자,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주 20시간(월 80시간) 이하의 취업자 및 이용자까지 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특히 방과 후 활동서비스의 경우 기존 신청 자격은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으로 중, 고등학생만이 이용할 수 있었으나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해 초등학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고 이용 가능 시간을 기존 13시~19시에서 13시~21시로 2시간 늘려 더 늦은 시간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도전적 행동이 심해 그룹형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 전담 제공인력 1인이 이용자 1인을 대상으로 주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1인 서비스가 신설돼 기존에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이 가능해졌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침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시기 더욱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호자일시부재 특별급여’의 사유에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를 추가해 특별급여의 지원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예정인 장애인은 당초 1개월 전에만 활동지원급여 사전신청이 가능했으나 이 기간을 2개월로 늘려 충분한 준비 후 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출산에 의한 특별지원급여 사유에 유·사산의 경우를 포함했으며 이외에도 활동지원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자산 취득의 경우 반드시 운영위원회 사전 심의를 받도록 기준을 강화했고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등 근로기준 관련 사항을 고용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상세하게 지침에 반영했다.

보건복지부 백형기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지침 개정으로 많은 발달장애인이 더욱 촘촘하게 마련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상황으로 더욱 어려워진 장애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서비스를 확충하겠다”고 전했다.

정부지원금 받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하세요!



•주간활동 서비스란?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주간활동 서비스 내용

배움 활동 ·기초 학습 ·주제 학습 ·안전 교육 ·위생 교육	인지 치료 활동 ·수 인지 ·기초 인지 ·색 인지 ·학습	특수 체육 ·클라이밍 ·생활 체육 ·놀이 체육 ·외부 활동
운동 재활 ·재활 수영 ·PNF ·수중재활 운동	직업 재활 ·직업 교육 ·직업 체험 ·직업 체험	사회 적응 활동 ·화폐 학습 ·대중교통 이용 ·지역사회시설 이용
만들기 활동 ·종이 접기 ·클레이 ·멜리그라피 ·그리기	음악 치료 ·악기 ·악기로 감정 표현 ·합창 ·악기로 날씨 표현	미술 치료 ·내일굴 그리기 ·곡물 만다라 ·부분 그림 완성하기

참여 대상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자폐성 장애인
구비 서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지원 시간	단축형 56시간 / 기본형 100시간 / 확장형 132시간
운영 시간	월-금 am 9:00~ pm 17:00 / 점심 식사 및 송영 포함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란?

만6세이상 만18세미만 **청소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취미·여가, 직업탐구, 관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방과후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

서비스 제공단가: 기본단가 14,020원
그룹별 차등단가 적용(2인: 100%, 3인: 90%, 4인: 80%)



주간활동서비스와 이점이 달라요.

주간활동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와 함께
낮시간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이렇게 확대되었습니다

대상 확대

만12세
~ 만18세 미만
발달장애학생



만6세 이상
~ 만18세 미만
발달장애학생

이용시간 확대

월~금 13시~19시
토요일 9시~18시
(방학기간 월~토 9시~18시)



월~금 13시~21시
토요일 9시~18시
(방학기간 월~토 9시~18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협력 기관과 협약 체결



협력기관과의 협약 체결을 통해
방과후활동을 이용하는 발달장애학생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법률

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발달장애인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36호, 2019. 12. 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다.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라.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나목 및 다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나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제3조(발달장애인의 권리) ① 발달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발달장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사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③ 발달장애인은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자기의 견해와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5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나 복지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권리의 보장

제8조(자기결정권의 보장) ①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주거지의 결정,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

②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에게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

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절차,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사소통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학습에 필요한 의사소통도구를 개발하고 의사소통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발달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등을 통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담당 직원이 발달장애인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지침을 개발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정보의 작성 및 배포, 의사소통도구의 개발·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조단체의 결성 등) ①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조단체(自助團體)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자조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발달장애인이 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 그의 보호자, 제33조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직원이거나 그 밖에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③ 법원은 발달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본인, 검사,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따라야 한다.

제13조(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檢事長)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이하 이 조에서 “전담검사”라 한다)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14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범죄(이하 “유기등”이라 한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형법」 제271조에 따른 유기 또는 존속유기
2. 「형법」 제273조에 따른 학대 또는 존속학대
3.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에 따른 약취, 유인, 인신매매, 상해·치상, 살인·치사, 수수·은닉 등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에게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②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례가 없는지 소속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에게 관할 지역을 정기적으로 탐문하고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15조(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과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6.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유치원의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유치원의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
1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
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와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 등 종사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건강가정사 등 그 종사자
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 등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에 대한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나 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현장조사) ①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신고를 접수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그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현장에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행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발달장애인 또는 유기등 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은 그 발달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보호조치 등) 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발달장애인을 그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격리하거나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달장애인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쉼터(이하 “위기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발달장애인이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격리하여 보호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그 격리기간은 7일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7일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격리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 발달장애인의 복리를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시설 입소를 통한 보호조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④ 위기발달장애인쉼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보호조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복지지원 및 서비스

제18조(복지서비스의 신청) ① 발달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 및 서비스(이하 “복지서비스”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스스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5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지원,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가족지원,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문화·예술 등 복지지원
3.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및 제32조에 따른 휴식지원 등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

② 발달장애인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의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청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청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는 해당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계획(이하 “개인별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대상, 복지서비스 및 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신청받은 경우 대상자 선정 여부 및 복지서비스 내용을 결정하여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복지서비스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서비스의 내용, 방법 등이 포함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④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개인별지원계획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적합성 심사를 거쳐 승인을 얻은 경우 효력을 가진다.

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적합성 심사 결과를 발달장애인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개인별지원계획을 통보받은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는 발달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고려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수정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⑦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수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과 제5항의 절차를 따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의뢰 방법 및 절차, 수립 방

법 및 내용, 승인통보·신청·변경·수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 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하여 복지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연계하여야 한다.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복지서비스 대상자와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연계할 때에는 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 제공시간 및 방법·비용부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관련 정보의 제공방법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계좌의 관리 등) ① 발달장애인이 지급받을 복지지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예금의 인출 및 다른 계좌로의 이체 등 관리도 발달장애인 스스로 하여야 한다.

② 발달장애인에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계좌 관리를 대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을 대신하여 계좌를 관리할 사람(이하 “계좌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계좌관리인의 자격 및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계좌 관리의 점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계좌관리인이 발달장애인의 계좌를 발달장애인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하게 관리하는지 점검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보호자와 계좌관리인의 경우에는 그 계좌 관리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는 때에는 통장 등 필요한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계좌관리인은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통장 등 필요한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 요구 등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금으로 지급된 복지지원이 발달장애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발달장애인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계좌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좌 관리, 점검의 절차·대상·내용, 조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재활 및 발달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에게 적절한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의 원인규명과 치료 및 행동문제 등의 완화를 위한 연구 및 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거점병원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능

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직업훈련을 하는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평생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영화, 전시관, 박물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 등을 관람·참여·향유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흥미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 놀이기구,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생활체육 행사 및 생활체육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소득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수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 연금제도 등 관련 장애인 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거주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간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돌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제30조(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을 적절하게 보호 및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12. 3.>

③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과 교육 및 제2항에 따른 성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제31조(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동거하는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휴식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

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형제·자매로서 발달장애인이 아닌 아동 및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의 정서발달과 심리적 부담 해소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제공할 때에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발달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보호자를 포함한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①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구수행 지원
2. 발달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침·편람 마련 및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5. 발달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6.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지원
7. 제9조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8. 발달장애인 권리침해의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의 지원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4. 7.>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7.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 지원

8.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9.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10.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11.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발달장애인이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동료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력 배치 및 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12. 29.>

1.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직업재활시설

2.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3.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5.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활동지원기관
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10.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1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1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1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각 기관별로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 및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37조(서비스의 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인력의 수급 상황, 제공기관 현황과 서비스 수요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등을 지정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제공 방법 및 절차,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① 제37조제2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정받은 기관 등(이하 “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서비스제공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 30일 까지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지정권자는 인근 지역에 대체할 서비스제공기관이 없는 등 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철회를 권고하거나 그 밖의 다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권자는 서비스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40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과 보고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한 경우
5.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누설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⑤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9조(지도와 감독)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제40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제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41조(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제25조 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이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8조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운영 및 제22조에 따른 계좌 관리의 점검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제3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30조부터 제32조

까지에 규정된 서비스 또는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한 자

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 또는 직원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
3.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대하여 계좌 관리 상황과 관련한 자료열람 또는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계좌관리인
4.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5. 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업·휴업 시 신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12618호, 2014. 5. 20.>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펼침 부 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정부조직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1>까지 생략

<192> 법률 제12618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으로, “경찰 공무원, 해양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19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13664호, 2015. 12. 2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7호 중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활동지원기관”으로 한다.

②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7호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⑧부터 ⑳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부 칙 <법률 제14324호, 2016. 12. 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2>까지 생략

<18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18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부 칙 <법률 제16736호, 2019. 12.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사회적 농업 서식

가. 발달장애인 가족 귀농 귀촌을 위한 초기 면접지

발달장애인 가족 귀농귀촌을 위한 초기면접지

1. 인적사항

		생년월일	
가족관계	등본첨부	성별	
주소(도로명)			
주 양육자	관계	이름	연락처
장애등록(O, X)	장애명(등급):		장애등록일자:

2. 현행수준

내용		보호자가 구체적으로 기록	
생활	자조 기술	이 닦기	
		손 씻기	
		세수·몸 씻기	
		용변 처리하기	
		옷 입고 벗기	
		식사 습관	
		이동수단	
	사회성	친구 관계	
		상점·공공기관 이용하기	
	선호도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여가 활용	
	특별한 습관이나 버릇		

내용		보호자가 구체적으로 기록
학습	학습에 대한 태도나 관심 정도	
	학습수준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이용하는 병원: ■ 수술경험 또는 앓고 있는 질환: ■ 복용중인 약물의 종류와 이름: ■ 복용이유: ■ 복용횟수: ■ 주의해야 하는 음식: 	

3. 의견

	내용
계획	지도되길 바라는 사회적 기술과 관련된 내용
필요서비스 (발달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정적으로 지도되길 바라는 교과와 관련된 내용
필요서비스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나. 발달장애인 가족 귀농/귀촌 교육 결과 보고서

[]월 [1주-5주]차 시행 결과보고서[1/2]

시행 내용						
시행 금액						
참석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월 [1-5주]차 시행 결과보고서[1/2]		
시행 팀명		
활동사진		

다. 월별 회의록

[]월 [1]차 회 의 록						
회의일시						
회의장소						
집행금액						
회의내용						
회의사진						
참석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라. 주말학교 프로그램 운영안

결 재	전담강사	대표이사

희망그린마을 프로그램운영안

차시(날짜)					강사	
출근사항					보조강사	
출결사항						
재 적		출 석				
주제						
활동 모습						
수업 평가 및 건의 사항						

희망그린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모델메뉴얼

